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43 - 09577호

시행일자 2023. 10. 31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 및 12세 미만 접종 안내(질병관리청)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기획과-551(2023.10.31.)

3.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의 변경사항(2023.10.19.개정)을 다음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,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안내 및 수정 사항

- 2023-2024절기 코로나19 실시기준 요약표 추가 및 오접종 사례 수정
- 6개월 - 4세 화이자 백신(도입예정) 접종용량 수정
- (기존) 0.3ml → (변경) 0.2ml
- 실시기준 관련 주요 질의 응답(FAQ) 수정

나. 실시기준 다운로드

-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>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> 게시판 > 자료실
-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홈페이지 > 알림 · 서식 > 지침
-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> 알림 · 자료 > 법령 · 지침 · 서식 > 지침
-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http://www.kma.org > 공지·뉴스 > 코로나19 등 감염병 종합게시판
※ 변경 시 추가 안내 예정

4. 아울러, 6개월-4세 및 5세-11세의 2023-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1.1일부터 시행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, 접종권고 대상인 고위험군 영유아 및 소아·청소년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(권고대상) 영유아(6개월-4세) 및 소아(5-11세) 고위험군

<p><영유아(6개월-4세) 고위험군 범위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심각한 면역 저하자 : 고용량 스테로이드(prednisone기준 20mg/일 또는 2mg/kg/일 이상)를 장기간(14일 이상) 사용하는 경우, 혈액암 등 항암치료 중인 경우,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, 장기이식환자 중증면역결핍질환 및 HIV감염 등 ▪ 골수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, 또는 키메라 항원 T 세포(CAR-T) 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▪ 만성폐질환, 만성심장질환, 만성간질환, 만성신질환, 신경-근육질환 ▪ 중증뇌성마비 또는 다운 증후군(삼염색체증 21)과 같이 일상생활에 자주 도움이 필요한 장애 ▪ 이외에도, 상기 기준에 준하는 고위험군 영유아(6개월-4세)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
<p><5~11세 중 접종이 필요한 고위험군 범위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만성폐질환, 만성심장질환, 만성간질환, 만성신질환, 신경-근육질환 ▪ 당뇨, 비만, 면역저하자(면역억제제 복용자) ▪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, 요양, 수용 중인 소아 ▪ 이외에도, 상기 기준에 준하는 고위험군 5-11세 소아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

나. (접종일정) 2023.11.1.(수) ~ 2024.3.31.(일)

다. (접종장소)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※사전예약없이 당일 접종 가능

라. (접종백신) ※ 자세한 사항은 실시기준 참조



* 붙임 :

1. 질병관리청 공문 1부.
2. 2023-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개정(2023.10.19. 개정) 1부.
3.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기준 요약 1부. 끝.

대한 의 사 협 회 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(26개 전문과목학회), 대한개원의협의회(각과개원의협의회), 대한 병원의사협의회, 대한전공의협의회, 대한공중보건사의협의회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